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 작성사례

2012. 4.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목 차

1.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작성례

- 가.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 1
- 나.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비거주자용)2

2. 국외투자신고서 등 작성례

- 가. (사모)국외투자기구가 (사모)국외투자기구에 투자 3
-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공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 7
- 다. (사모)국외투자기구가 공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 9
- 라.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사모)국외투자기구에 투자11

1.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작성례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2서식] <신설 2012.2.28>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

※ 해당되는 []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① 유형	[√] 법인, [] 연금, [] 기금, [] 조세조약상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조세조약 관련 규정: [] 기타()		
② 법인명	ABC INC.	⑥ 주소	100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③ 대표자 성명	HONG GILDONG	⑦ 거주지국	UNITED STATES
④ 납세자번호	21-123456	⑧ 국가코드	US
⑤ 설립연월일	1991.01.01	⑨ 전화번호	053-1234-56789

2.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규정

⑩ 대한민국과 <u>미국</u> 간의 조세조약	제 <u>13</u> 조 제 <u>2</u> 항 제 <u> </u> 호	이자 소득 세율 <u>12</u> %
	제 <u>12</u> 조 제 <u>2</u> 항 제 <u>가</u> 호	배당 소득 세율 <u>15</u> %
	제 <u>14</u> 조 제 <u>2</u> 항 제 <u> </u> 호	사용료 소득 세율 <u>10</u> %

3. 실질귀속자 판정기준

- ⑪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계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예 [], 아니오 [√]
- ⑫ 계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예 [], 아니오 [√]
- ⑬ 설립지국과 한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국외투자기구: 예 [], 아니오 [√]
- ⑭ 거주지국의 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 ⑮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습니까? 예 [√], 아니오 []
- ⑯ 본인 또는 지급받는 소득이 대한민국과 거주지국 간의 조세조약상 혜택을 배제(제한)시키는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까? 예 [], 아니오 [√]

본인은 「법인세법」 제98조의6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재내용에 오류가 없으며 이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또는 실질귀속자를 대리하여 서명을 하도록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 신청인은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은 위 ⑪ ~ ⑬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여 예로 표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연금 등이 설립된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은 위 ⑭ 또는 ⑮ 중 하나에 아니로 표시한 경우 또는 위 ⑯에 예로 표시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12 년 7 월 1 일

신 청 인(대표자)

HONG GILDONG HONG GILDONG (서명 또는 인)

(주) 가나다 귀하

첨부서류	⑪, ⑫, 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대리인	⑰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⑱ 사업자(주인)등록번호
	⑳ 주소 또는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비거주자용)

※ 해당되는 []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① 성명 (Last Name) <u>HONG</u> (First Name) <u>JOHN</u> (Middle Name)	
② 주소 (거주지국 주소) <u>100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u> (국내 거소) <u>서울 종로구 수동동 104</u>	
③ 납세자번호 <u>21-1234567</u>	④ 생년월일 <u>1971.01.01</u>
⑤ 거주지국 <u>United States</u>	⑥ 거주지국코드 <u>US</u>
⑦ 전화번호 (거주지 전화) <u>053-1234-1367</u> (국내 전화) <u>02-1234-5678</u>	
⑧ 국내체제일 []없음 (최근 1년간) <u>10</u> 일 (최근 2년간) <u>20</u> 일	

2.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규정

⑩ 대한민국과 <u>미국</u> 간의 조세조약	제 <u>13</u> 조 제 <u>2</u> 항 제 <u>호</u> 이자 소득 세율 <u>12</u> %
	제 <u>12</u> 조 제 <u>2</u> 항 제 <u>가</u> 호 배당 소득 세율 <u>15</u> %
	제 <u>14</u> 조 제 <u>2</u> 항 제 <u>호</u> 사용료 소득 세율 <u>10</u> %

3. 비거주자 판정기준

항 목	예	아니오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
㉡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 최근 2년 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365일 이상입니까?		√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
㉥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
㉧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		<u>미국</u>

본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8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재내용에 오류가 없으며 이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국내원천 소득의 실질귀속자(또는 실질귀속자를 대리하여 서명을 하도록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 1) 신청인은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2) 비거주자 판정기준에 따라 본인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변경하려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귀하에게 통지하고, 본인의 이 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4천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겠습니다.

2012 년 7 월 1 일

신 청 인

HONG JOHN HONG JOHN (서명 또는 인)

(주) 가나다 귀하

첨부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국내체제일이 있는 경우)	수수료 없음
대리인	⑩ 대리인유형 []납세관리인 []그 외 대리인 ⑪ 성명 또는 법인명 ⑫ 사업자(주민)등록번호 ⑬ 주소 또는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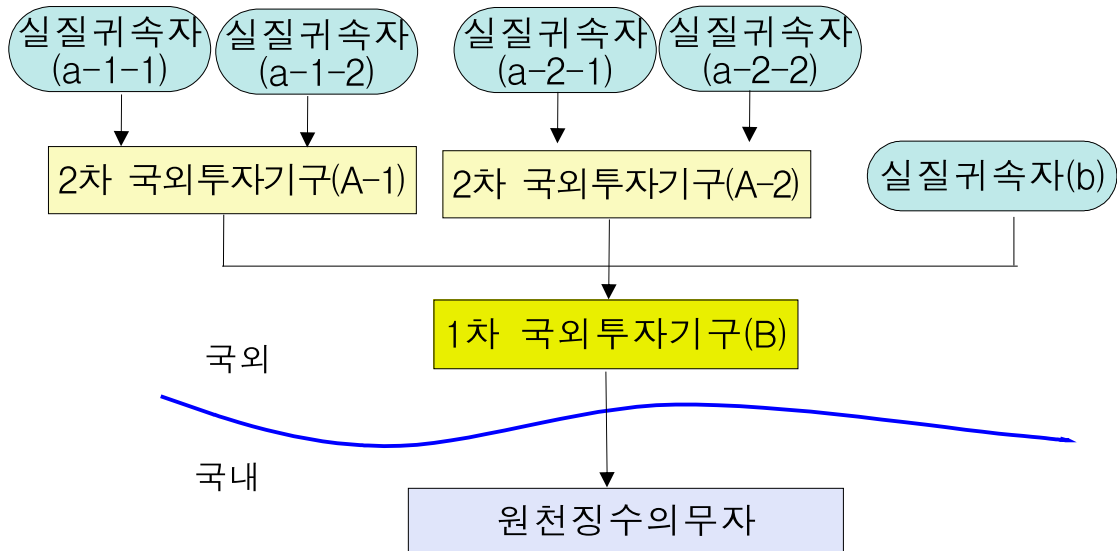
※ 귀 금융기관이 본인의 법무부 출입국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HONG JOHN 고 객 명

HONG JOHN (서명 또는 인)

2. 국외투자신고서 등 작성례

가. (사모)국외투자기구가 (사모)국외투자기구에 투자



□ 2차 국외투자기구(A-1, A-2)

- ① 실질귀속자(a)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명세'를 작성
- ② 작성된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1차 국외투자기구(B)에 송부

□ 1차 국외투자기구(B)

- ③ A-1 및 A-2가 송부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B에 직접투자하고 있는 실질귀속자(b)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작성

⇒ 1차 국외투자기구는 ①~③의 과정을 거쳐 2차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명세'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1차 국외투자기구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작성

○ 2차 국외투자기구(A-1)가 작성하는 신고서

2.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⑰ 명칭 <i>A-1</i>	⑱ 대표자 성명 <i>Hong Gil Dong</i>	⑲ 설립연월일 <i>2010.1.1.</i>	⑳ 전화번호 <i>123-1234-5678</i>
㉑ 주소 <i>200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i>			
㉒ 설립지국 <i>USA</i>		㉓ 국가코드 <i>US</i>	
㉔ 유형 ☒ 법인 ☐ 신탁 ☐ 파트너십 ☐ 기타()			

본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8, 「법인세법」 제9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국내원천소득 제한세를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수령하여 이를 근거로 이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및 실질귀속자 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위 신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12 년 7 월 1 일

신고인

Hong Gil Dong Hong Gil Dong (서명 또는 인)

○ 1차 국외투자기구(B)가 작성하는 신고서

2.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⑰ 명칭 <i>B</i>	⑱ 대표자 성명 <i>Hong Gil Dong</i>	⑲ 설립연월일 <i>2010. 01.01</i>	⑳ 전화번호 <i>123-456-5868</i>
㉑ 주소 <i>103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CANADA</i>			
㉒ 설립지국 <i>CANADA</i>		㉓ 국가코드 <i>CA</i>	
㉔ 유형 ☒ 법인 ☐ 신탁 ☐ 파트너십 ☐ 기타()			

본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8, 「법인세법」 제9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국내원천소득 제한세를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수령하여 이를 근거로 이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및 실질귀속자 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위 신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12 년 7 월 1 일

신고인

Hong Gil Dong Hong Gil Dong (서명 또는 인)

□ 실질귀속자 명세(이자소득) 작성

○ 2차 국외투자기구(A-1)가 작성하는 실질귀속자 명세

① 구분	② 번호	③ 명칭	④ 주소	⑤ 거주지국	⑥ 적용세율 ^{주1)}	⑦ 지분율	⑧ 징수세율 (⑥ × ⑦)
BO	1	실질귀속자 (a-1-1)	100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US	13.2	30	3.96
BO	2	실질귀속자 (a-1-2)	100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CANADA	CA	10	70	7
⑨ 합계						100	10.96

주1) '⑥ 적용세율' 란은 해당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가능한 제한세율을 적되,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기재.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인 경우 또는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세율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예, 20%×1.1=22%)을 기재.

상기 사례에서 한-미 조세조약은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주민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자소득의 경우 적용세율에 12% × 1.1 = 13.2%를 기재하고 캐나다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가(주민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10%를 기재

○ 2차 국외투자기구(A-2)가 작성하는 실질귀속자 명세

① 구분	② 번호	③ 명칭	④ 주소	⑤ 거주지국	⑥ 적용세율	⑦ 지분율	⑧ 징수세율 (⑥ × ⑦)
BO	1	실질귀속자 (a-2-1)	102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US	13.2	40	5.28
BO	2	실질귀속자 (a-2-2)	102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Australia	AU	15	60	9
⑨ 합계						100	14.28

○ 1차 국외투자기구(B)가 작성하는 실질귀속자 명세

① 구분 ^{주2)}	② 번호	③ 명칭	④ 주소	⑤ 거주지국	⑥ 적용세율 ^{주3)}	⑦ 지분율	⑧ 징수세율 (⑥ × ⑦)
BO	1	실질귀속자(b)	103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Hongkong.	HK	22	26.4352	5.8157
V	1	2차 투자기구 (A-1)	103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공란)	10.96	50	5.48
V	2	2차 투자기구 (A-2)	103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CANADA	(공란)	14.28	23.5648	3.3651
⑨ 합계						100	14.6608 ^{주4)}

주2) ①구분 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인 경우 'V'로 표기하고, 실질귀속자인 경우 'BO'로 표기.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 중에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를 먼저 적고, 국외투자기구를 나중에 적음

주3) 당해 국외투자기구에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의 국외투자 기구 신고서에 첨부된 실질귀속자 명세 중 란에 기재된 세율을 옮겨 적음.

주4) ‘ ㉑정수세율의 합계’가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백분율로 적음(예: XX .XXXX%)

□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의무자 작성)

㉗ 주민(사업자)등록번호	㉖ 성명(상호)	㉗-1 비거주자 생년월일	㉙ 주 소	㉙-1 거주지국코드	㉕ 세율(주5) (%)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㉔,㉕ 소득 (법인)세	㉔ 지방 소득세	㉓ 계
XXXXXX1	실질귀속자(b)	1987.12.01	103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Hongkong.	HK	22	264,352	52,870	5,287	58,157
XXXXXX11	실질귀속자(a-1-1)	1975.04.02	100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US	13.2	150,000	18,000	1,800	19,800
AXXXXXX	실질귀속자(a-1-2)	1954.03.02	100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CANADA	CA	10	350,000	31,818	3,182	35,000
BXXXXX5	실질귀속자(a-2-1)	1960.04.03	102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US	13.2	94,259	11,311	1,131	12,442
FXXXXX6	실질귀속자(a-2-2)	1945.12.23	102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Australia	AU	15	141,389	19,280	1,928	21,208
합계						1,000,000	133,280	13,328	146,608 주6)

주5) 세율 : 지급명세서에 기재하는 세율은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주민)세의 포함여부에 불구하고 지급명세서 작성 목적으로 지방소득세가 반영된 세율을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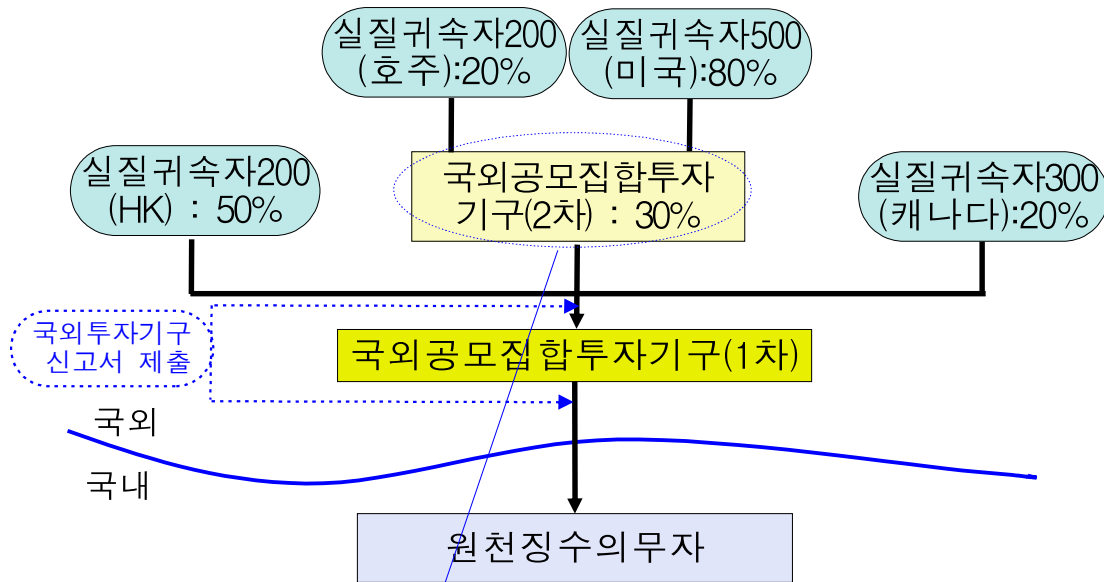
예) 미국 : $12\% \times 1.1 = 13.2$

세율이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백분율로 기재(예: XX .XXXX%)

주6) 146,608 : 징수하는 세액의 합계금액은 다음과 일치함

소득금액(1,000,000) × ㉑정수세율의 합계(14.6608%) = 146,608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공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2차)가 작성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주1)}

⑪ 국가 등	총투자 금액·비율		⑭ 실질귀속 자 수	⑮ 적용세율(%) ^{주2)}		
	⑫ 금액(단위: USD)	⑬ 비율(%)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United States	800,000	80	500	13.2	16.5	11
Australia	200,000	20	200	15	15	15
⑯ 합계	1,000,000	100%	700	13.56	16.2	11.8

주1)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란은 실질귀속자들을 거주지 국가별로 분류하여 기재함. 다만, 신고서 제출 당시 국가별 분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제출 가능

주2) '⑮적용세율'의 합계는 소득의 종류별로 각 국가별 총투자비율에 국가별 적용세율을 곱한 비율(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 해당 투자비율에 적용세율을 곱한 비율을 포함)을 모두 합산하여 기재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1차)가 작성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⑪ 국가 등	총투자 금액·비율		⑭ 실질귀속 자 수	⑮ 적용세율(%) ^{주4)}		
	⑫ 금액(단위: USD)	⑬ 비율(%)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Canada	100,000	20	300	10	5	10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2차) ^{주3)}	150,000	30	1	13.56	16.2	11.8
HK	250,000	50	200	22	22	22
⑯ 합계 ^{주5)}	500,000	100%	501	17.068	18.86	16.54

주3)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실질귀속자들은 거주지 국가별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국외투자기구 명칭을 적고 실질귀속자 수는 1로 적음

주4) 다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제출한 신고서의 ⑮적용세율란에 기재된 소득별 적용세율의 합계를 기재

주5) '㉔적용세율의 ㉔ 합계' 계산례

- 이자소득 적용세율 합계 : $(20\% \times 10\%) + (30\% \times 13.56\%) + (50\% \times 22\%) = 17.068\%$
- 배당소득 적용세율 합계 : $(20\% \times 15\%) + (30\% \times 16.2\%) + (50\% \times 22\%) = 18.86\%$
- 사용료소득 적용세율 합계 : $(20\% \times 10\%) + (30\% \times 11.8\%) + (50\% \times 22\%) = 16.54\%$

□ '㉔적용세율 ㉔ 합계' 계산방법 : $e\%$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㉔ 국가 등	총투자 금액·비율		㉔ 실질귀속 자 수	㉔ 적용세율(%)		
	㉔ 금액(단위:)	㉔ 비율(%)		소득	소득	소득
		$a\%$		$b\%$		
		$c\%$		$d\%$		
㉔ 합계		100%		$e\%$ ^{주6)}		

주6) 적용세율의 합계 : $e\% = (a\% \times b\%) + (c\% \times d\%)$

b% 및 d%는 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이 반영된 세율

$a\% + c\% = 100\%$

㉔적용세율의 합계가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백분율로 적음.(예: XX.XXXX%)

□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의무자 작성)

㉔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㉔ 성명(상호)	㉔ 주 소	㉔-1 거주 지국코드	㉔ 세율 (%) ^{주1)}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㉔㉔ 소득 (법인)세	㉔ 지방 소득세	㉔ 계
XXXXXXX	국외공모집합투 자기구(1차)	103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HK ^{주6)}	17.068 ^{주7)}	1,000,000	155,164 ^{주8)}	15,516	170,680

주6) HK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거주지국 코드는 단지 지급명세서 작성 목적으로 총투자금액·비율이 가장 큰 국가를 기재(설립지국을 기재하지 않음)

주7) 17.068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의 ㉔적용세율 란에 기재된 소득별 적용세율의 합계를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백분율로 기재(예: XX.XXXX%).

주8) 155,16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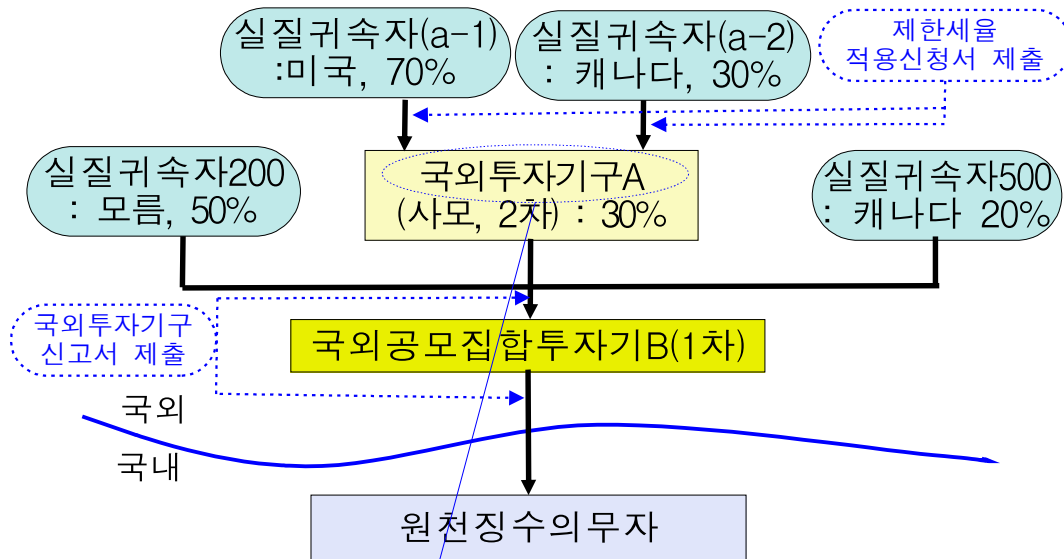
소득금액(1,000,000)

× 적용세율(17.068%) : 국외투자 신고서에 기재된 소득별 ㉔적용세율의 합계*

÷ 1.1 : 적용세율은(17.068%)는 지방소득세율(10%)이 반영된 세율이므로 1.1로 나누어
소득(법인)세를 계산

= 155,164

다. (사모)국외투자기구가 공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



□ 국외투자기구(사모, 2차) : 실질귀속자 명세

- ① 실질귀속자(a)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국외 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명세'를 작성
- ② 작성된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1차 국외 투자기구(B)에 송부

① 구분	② 번호	③ 명칭	④ 주소	⑤ 거주지국	⑥ 적용세율 ^{주1)}	⑦ 지분율	⑧ 징수세율 (⑥ × ⑦)
BO	1	실질귀속자(a-1)	100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US	13.2	30	3.96
BO	2	실질귀속자(a-2)	100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CANADA	CA	10	70	7
⑨ 합계						100	10.96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1차 :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⑪ 국가 등	총투자 금액·비율 ^{주1)}		⑭ 실질귀속자 수	⑮ 적용세율(%)		
	⑫ 금액(단위: USD)	⑬ 비율(%)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Canada	100,000	20	500	10	15	10
국외투자기구A	150,000	30	1	10.96	15.45	11.95
ZZ	250,000	50	200	22	22	22
⑯ 합계	500,000	100%	701	16.288	18,635	16.585

- 국외투자기구A(사모, 2차)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자기구 신고서 및 실질귀속자 명세를 참고하여 국외투자자기구 신고서 '1-2 국가별 총투자 금액 등 현황'을 작성
-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실질귀속자들은 거주지 국가별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국외투자자기구 명칭을 적고 실질귀속자 수는 1로 적음

□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의무자 작성)

⑦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⑥ 성명(상호)	⑨ 주 소	⑪-1 거주 지국코드	⑫ 세율 (%) ^{주1)}	⑭ 지급액 (소득금액)	⑮⑯ 소득 (법인)세	⑰ 지방 소득세	⑱ 계
XXXXXXX	국외공모집합투 자기구B(1차)	103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주1)}	ZZ ^{주2)}	16.288 ^{주3)}	1,000,000	148,073 ^{주4)}	14,807	162,880

주1)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지급명세서상 주소는 설립된 국가의 소재지를 기재

주2) ZZ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거주지국 코드는 단지 지급명세서 작성 목적으로 총투자금액·비율이 가장 큰 국가를 기재(설립지국을 기재하지 않음), 본 사례는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총투자금액 비율이 가장 크므로 'ZZ'를 기재하였음

주3) 16.288 : 국외투자자기구 신고서의 ⑮적용세율 란에 기재된 소득별 적용세율의 합계를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백분율로 기재(예: XX.XXXX%)

주4) 148,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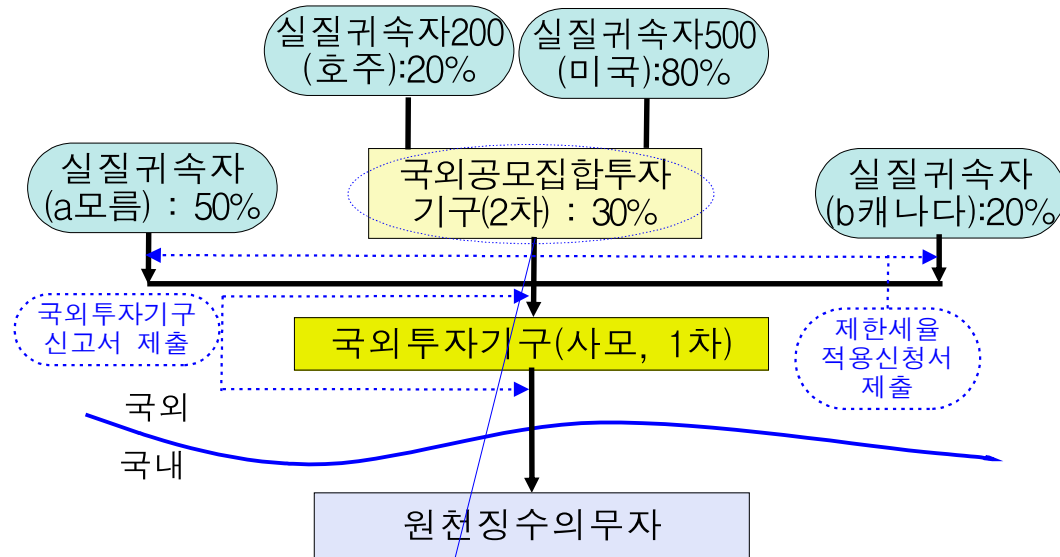
소득금액(1,000,000)

×적용세율(16.288%) : 국외투자 신고서에 기재된 소득별 ⑮적용세율의 합계

÷ 1.1 : 적용세율은(16.288%)는 지방소득세율(10%)이 반영된 세율이므로 1.1로 나누어
소득(법인)세를 계산

= 148,073

라.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사모)국외투자기구에 투자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2차) :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⑪ 국가 등	총투자 금액·비율		⑭ 실질귀속 자 수	⑮ 적용세율(%)		
	⑫ 금액(단위: USD)	⑬ 비율(%)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United States	400,000	80	500	13.2	16.5	11
Australia	100,000	20	200	15	15	15
⑯ 합계	500,000	100%	700	13.56	16.2	11.8

□ 1차 국외투자기구(B) : 실질귀속자 명세

① 구분	② 번호	③ 명칭	④ 주소	⑤ 거주지국	⑥ 적용세율	⑦ 지분율	⑧ 징수세율 (⑥ × ⑦)
BO	1	실질귀속자(a)	ZZ	ZZ	22	50	11
BO	2	실질귀속자(b)	103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CANADA	CA	10	20	2
V	1	국외공모집합 투자기구(2차)	103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US ^{주1)}	13.56 ^{주2)}	30	4.068
					⑨ 합계	100	17.068

주1)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여 실질귀속자 명세에 기재하는 경우 국외공모집합 투자기구의 거주지국 코드는 단지 실질귀속자 명세 작성 목적으로 총투자금액·비율이 가장 큰 국가를 기재 (설립지국을 기재하지 않음)

주2) 국외투자기구에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제출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의 ⑮적용세율란에 기재된 소득별 적용세율의 합계를 적음

□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의무자 작성)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⑥ 성명(상호)	⑦-1 주자 월일	비거 생년	⑨ 주 소	⑪-1 거주지국코드	⑫ 세율 (%)	⑭ 지급액 (소득금액)	⑮⑯ 소득 (법인)세	⑰ 지방 소득세	⑱ 계
XXXXXXX	실질귀속자(a)	1987.12.01		ZZ	ZZ	22	500,000	100,000	10,000	110,000
XXXXXXX	실질귀속자(b)	1975.04.02		1031,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CANADA	CA	10	200,000	18,182	1,818	20,000
XXXXXXX	국외공모집합 투자기구(2차)	(공란)		1032,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USA	US ^{주3)}	13.56 ^{주4)}	300,000	36,982 ^{주5)}	3,698	40,680
합계							1,000,000	155,164	15,516	170,680

주3) US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거주지국 코드는 단지 지급명세서 작성 목적으로 총투자금액·비율이 가장 큰 국가를 기재(설립지국을 기재하지 않음)

주4) 13.56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의 ⑮적용세율 란에 기재된 소득별 적용세율의 합계를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백분율로 기재(예: XX.XXXX%).

주5) 36.982

소득금액(300,000)

×적용세율(13.56%) : 국외투자 신고서에 기재된 소득별 ⑮적용세율의 합계*

÷ 1.1 : 적용세율은(13.56%)는 지방소득세율(10%)이 반영된 세율이므로 1.1로 나누어 소득(법인)세를 계산

= 36,982

* 다음 비율의 합계

① 소득의 종류별로 각 국가별 총투자비율에 국가별 적용세율을 곱한 비율

②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 해당 투자비율에 적용세율을 곱한 비율

즉, 13.56% = (13.2% × 80%) + (15% × 20%)